

財務諸表 중심의 會計理論體系에 관한 研究

李 正 浩

『目 次』	
一. 序 言	四. 財務諸表中心의 會計理論의 展開
二. 傳統的 會計理論의 特徵	1. 歷史的 背景
1. 傳統的 會計理論의 一般構造	2. 會計理論構造의 定立方法
2. 構造的 特徵	3. 財務諸表目的 設立의 接近方法
3. 機能的 特徵	五. 結 言
三. 傳統的 會計理論의 問題點	

一. 序 言

會計를 하나의 확립된 知識體系로서 이해하려는 움직임은 1930年代를 기점으로 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學者와 研究機關에 의하여 많은 研究成果가 발표되었다. 오늘날 하나의 社會制度로 확립되어 經濟社會에서 수용되고 있는 현행의 財務會計理論은 오랫동안 企業에서慣行으로 되어오던 會計實務를 분완전하게나마 體系化하여 형성된 것이다. 會計公準을 上位概念으로 하여 會計原則 및 規則 등으로 要約·具體化된 理論體系는 이와 같이 하여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傳統的 財務會計理論⁽¹⁾은 그의 確立 以後⁽²⁾ 約 40년의 歷史를 거치는 동안 外部利害關係者에게 情報를 提供하는 理論으로서 그리고 또한 監查制度를 뒷받침하는 理論의 支柱로서 큰 役割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1960年을 넘어서면서 傳統的 財務會計理論에 대한 構造的 및 機能의 면에서 批判이 가하여지고 새로운 차원에서 會計學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이 急速度로 增加하고 있다. 會計學의 方法論에 대한 再吟味, 會計公準 및 會計原則을 둘러싼 會計理論構造의 再檢討, 會計의 基本理念과 基本目標의 再認識 등 近年에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會計學界的 새로운

筆者：서울大學校 經營大學 經營研究所 研究員，서울大學校 經營大學 教授

本研究는 1978年度 文教部 學術研究費에 의한 것임。

- (1) 本稿에서 “傳統的 財務會計理論”이란 의미는 현재 企業社會에서一般的으로 수용되고 있는 會計實務를 뒷받침하고 있는 理論을 指함。
- (2) 傳統的 會計理論이 그 나름대로 體系化된 것은 1940年頃으로 본다。

研究動向은 한편으로는 會計學을 단순히 技術論(art)으로부터 科學(science)으로 發展시키려는 意圖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時代 環境의 變화에 適應시키려는데서 나타난 새로운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傳統的 財務會計理論이 그의 理論的妥當性에 있어서나 또한 實踐的有用性에 있어서挑戰을 받게됨에 따라서 그의 具體的表現인 現行의 會計原則에 대한 妥當性 및 法的規範性에 懐疑를 갖게되어 正當한 理論으로서의 權威를喪失해가고 있다. 이에 대해서 近年에 急速히 臺頭하고 있는 會計情報(accounting informations or communications)의 理論이나 會計情報 시스템論에의 관심이 集中되고 있다. 지금까지 會計學의 理論의 뒷받침을 해왔던 페이톤(W.A. Paton), 리틀톤(A.C. Littleton)의 理論이나 츠마렌바하(E. Schmalenbach)의 理論은 어떤 點에서 批判을 받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어떤 運命에 놓여질 것인가?

會計가 기본적으로 企業과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는 利害關係者에게 企業의 經濟活動內容을 測定·傳達하는 問題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자연히 우리의 관심은 財務諸表에集中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企業의 經濟活動 내용이 財務諸表에 要約·集積되어 表示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財務諸表를 財務的情報를 傳達하는 하나의 手段으로 볼 때 이것은 情報를 活用하고자 하는 利害關係者에게 理解可能하고 또 活用하려는 目的에 適合한 性格을 갖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돌이켜 볼 때 지금까지 우리의 會計는 그릇된 暗默的인前提를 假定하여서 財務的情報를 「어떻게」(How)製作할 것인가에 過度하게 집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問題는 財務諸表가 어떻게 作成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Why)作成하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財務諸表가 作成되는 理由를 解明치 못하고 會計의 機械的 계산방법에 관한 論議만을 거듭하는 것은 無意味하다. 이 같은 점에서近年 美國會計學界에서는 「財務諸表의 目的」(The 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에 관한 研究가 活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각컨대 낡은 理論이 새로운 理論으로서 代替될 경우 우리는 아무렇게나 新舊理論을 取捨選擇할 것이 아니라 어떤 理由에서 그동안 낡은 理論이 그대로 存續할 수 있었으며, 또 새로운 理論이 나타나게 된 背景을 冷靜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낡은 것이 새로운 것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舊理論과 新理論의 斷絕(discontinuity)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歷史的連續性을 갖고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같은 뜻에서 本稿는 傳統的 財務會計理論이 어떤 假定과 目的에서 형성된 것이며,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 어떻게 批判받고 있는가를 밝히는 동시에 最近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理論體系의 研究動向을 論述하는데 目的이 있다.

二. 傳統的 會計理論의 特徵

1. 傳統的 會計理論의 一般構造

會計의 一般構造를 形成하기 위해서는 어떤 思考(ideas)를 表現할 수 있는 한 組의 記號(symbol)와 資料(data)를 要約하여 意味있는 方法으로 表示할 수 있는 한 組의 機構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이같은 점에서 볼 때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會計의 一般構造는 計定(accounts)이라든가 元帳(ledgers), 試算表(trial balance) 등 諸概念으로 表示되는 複式簿記가 오향동안 會計를 代辦해 왔으며, 複式簿記 機構를 通해서 會計資料를 財務諸表라는 特定의 形式으로 要約·表示하였던 것이다. 複式簿記에 의한 會計機構는 會計過程의 結果가 기본적으로 相互關聯性 있는 一連의 財務諸表로서 表示될 수 있고, 또 이들 財務諸表는 기본적으로 同一한 會計資料에 基礎를 두고 있으면서 서로 相異한 意味와 內容을 갖는 報告書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 그 效益이 있는 것이다.

이같은 複式簿記機構를 前提로 한 현행의 財務諸表理論 즉 財務會計理論은 그의 下部構造로서 會計公準(accounting postulates), 中間構造로서 會計原則(accounting principles), 그리고 上部構造로서 會計規則 및 節次(accounting rules and procedures)의 3段階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경우의 會計公準은 현행의 會計實務나 傳統的인 會計慣行을 一般化한다든가 또는 要約한 이른바 歸納的 方法으로 형성된 것이다. 例를 들면 현행 企業會計의 計算構造를 理論的으로 說明하는데는 企業實體(entity) 貨幣評價(valuation) 및 會計期間(accounting period) 등의 諸慣習(公準)과 같은 制度的 公準이 支配하고 있는 것이고⁽³⁾, 이들은 現실의 會計實務나 會計慣行을 構造的으로 파악하는데 主眼點이 두어져 있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은 會計原則論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傳統的으로 신봉되어 오는 會計原則은 會計實務로부터 發達하여 일반적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된 會計慣習을 要約한 이른바一般的 承認性(general acceptance)을 갖는 것으로써 構成되어 있다 (例 保守主義, 原價主義, 實現主義等). 이와 같이 볼 때 현행의 財務會計理論 또는 財務諸表理論은 스토리(R.K. Storey)가 말한 바와 같이 單純히 會計實務의 現狀을合理的으로 說明하는 意圖밖에 갖고 있지 않은 것⁽⁴⁾이며 현행의 會計慣習이나 會計實務를 支持하기 위해서 오늘날 存在하고 있는 이른바 基礎概念이나 會計原則이란 것의 大部分은 카트렐(G.R. Cattell)이 지적한 바와 같이 “주어

(3) Stephen Gilman, *Accounting Concepts of Profit* (New York: The Ronald Press Co., 1939), pp. 25-97.

(4) R.K. Storey *The Search for Accounting Principles*, AICPA, 1964, pp. 64-65.

모은 理論에 불과한 것”⁽⁵⁾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意味에서 볼 때 길만(S. Gilman)에 의해서 展開된 會計思考, ⁽⁶⁾ 샌더스(T.H. Sanders) · 해필드(H.R. Hatfield) · 무어(U. Moore) 등에 의해서 成案된 會計原則, ⁽⁷⁾ 페이톤(W.A. Paton) 및 리틀頓(A.C. Littleton)에 의하여 完成된 會計機構⁽⁸⁾, 그리고 그레이디(P. Grady)의 會計原則目錄 등은 다같이 會計實務를 說明하는 것으로 一貫되어 있었던 것이지 엄밀한 意味에서 會計理論을 提唱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들은 會計의 룰(rule)이나 命題를 歷史的인 會計慣行에 根據하여 正當化시키려고 하여 古來로부터 傳來해 오는 實務慣行에서 會計의 正當性을 찾으려고 하였던 共通의 特徵을 가지고 있다.⁽¹⁰⁾

위에서 列舉한 諸學者들에 의하여 展開된 現행의 財務會計理論은 現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會計實務를 보다 타당한 방향으로 積極的이고 規範的으로 誘導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會計實務를 一般化함으로써 이것을 合理的으로 說明하는 性格을 갖는 理論으로서의 消極的 役割 밖에는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現행의 財務會計는 메이(G.O. May)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經驗의 蒸溜(distillation of experience)⁽¹¹⁾로부터 生成·發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構造的 特徵

그러면 이와 같이 會計慣習에 의하여 會計實務가 一般化되어 이를 體系化한 형식으로 이루어진 現행의 財務會計理論은 과연 어떤 構造的 特徵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딜너저(H.T. Deinzer)에 의하면 페이톤과 리틀頓에 의해서 代表되는 現행의 財務會計理論은 歷史的 原價配分모델(historical-cost-allocation model)이란 말로 特徵지울 수 있다고 한다.⁽¹²⁾ 歷史的 原價配分모델은 리틀頓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지 傳統的이라는 理由에서 만이 아니라 완전한 論理性을 갖는 會計數値는 原價를 반영하는 數値인 것이지 價値는 아니다.”⁽¹³⁾라는 前

- (5) G.R. Gattlet, "Better Objectives Needed to Improve Accounting Principles", *Journal of Accountancy*, Oct. 1969, p. 68.
- (6) Stephen Gilman, *Accounting Concepts of Profit* (New York: The Ronald Press Co., 1939).
- (7) T.H. Sanders, H.R. Hatfield and U. Moore, *A Statement of Accounting Principles* (New York: AICPA, 1938).
- (8) W.A. Paton and A.C. Littleton, *An Introduction to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AAA Monograph No. 5, 1940.
- (9) P. Grady, *Inventory of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s*, AICPA, ARS No. 7.
- (10) R.J. Chambers, "Blueprint for a Theory of Accounting," *Accounting Research*, Vol. 6, 1955, pp. 17-18.
- (11) George O. May, *Financial Accounting, a distillation of experience*, The Macmillan Co., 1943.
- (12) H.T. Deinzer, *Methodological Presuppose in Financial Accounting Models*, Accounting Series No. 5, 1968. pp. 7-3, and 15-18.
- (13) A.C. Littleton, *Structure of Accounting Theory*, AAA Monograph No. 5, 1953, p. 210.

提下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原價(cost)란 말은 때에 따라서는 購買價格(purchase price), 投下原價(invested cost), 歷史的 또는 原初的 原價(historical or original cost)라고도 부르는 것으로서 “鄙은 意味로 定義할 것 같으면 原價란 것은 相互獨立된 當事者間의 去來時에 取得된 財貨 및 用役 또는 發行된 證券의 去來價格(bargained-price)의 金額이다.”⁽¹⁴⁾

여하튼 歷史的 原價配分모델로서 特徵지울 수 있는 現행의 財務會計理論에서 會計의 目的 을 규정하는데 강력한 요인은 企業의 損益을 確定・報告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費用과 收益을 認識・測定하고 對應시킴으로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歷史的 原價配分모델 하에서는 “모든 財貨의 購入價額은 損益計算을 위한 출발점이 되며 그의 購入價額은 이와 관련된 財貨가 保有하고 있는 동안 계속 意味를 갖게 된다.”⁽¹⁵⁾ 그리하여 購入할 財貨의 原價, 즉 歷史的 原價를 當期의 收益에 對應하게 되는 消滅原價(expired costs)인 費用(expense)과 次期以後의 收益에 對應하게 될 殘餘原價(residual costs)인 資產(assets)으로 配分하는 것이 會計의 役割인 것이다. 이와 같이 보면 “在庫資產이나 工場設備는 價值(value)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의 運命을 기다리고 있는 未決狀態下에 있는 原價의 蓄積分”⁽¹⁶⁾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減價償却會計도 原價配分의 過程인 것인지 評價의 過程은 아님 것이다.⁽¹⁷⁾

이와 같이 보면 歷史的 原價配分모델을 基本의 思考의 출발점으로 하고 있는 現행의 財務會計理論은 損益을 確定하기 위하여 歷史的 原價를 費用과 資產으로 配分하는데 會計의 目적이 두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資源으로서의 資產價值가 貸借對照表에 計上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資產의 時價를 損益으로 認識하는 思考는 당연히 受容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會計思考가 獨逸에서는 1919年에 슈마렌바흐(Eugen Schmalenbach)⁽¹⁸⁾에 의해서, 美國에서는 이보다 約 20년이 늦은 1940年에 페이톤·리틀頓에 의해서 각각 完成을 보게 된 原價配分理論에 입각한 動態的 會計觀인 것이다.

3. 機能的 特徵

그러면 歷史的 原價配分모델로서 特徵지워지는 傳統的 會計理論은 會計가 수행할 機能 즉 役割이 어디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 會計理論을 展開하는데 會計의 機能을

(14) W.A. Paton and A.C. Littleton, op. cit., p. 24.

(15) H.T. Deinzer, op. cit., pp. 8-9.

(16) W.A. Paton and A.C. Littleton, op. cit., p. 7.

(17) AICPA, Accounting Terminology Bulletin No. 1.

(18) Eugen Schmalenbach, *Dynamic Accounting* (English Translation London: Gee & Company Ltd., 1959).

명확히 규정한다는 것은 理論構成의 出發點이 되는 동시에 그 内容을 형성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현행의 財務會計理論에 나타난 傳統的인 會計機能은 결론부터 말하면 利益의 算定에 두고 있다. 例를 들면 리틀턴은 모든 基本的研究는 그 自體의 分野에 屬해 있는 적어도 하나의 固有觀念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하면서 會計의 中心課題로서 “利益”을 提示하고 있다.⁽¹⁹⁾ 따라서 利益을 測定한다는 것은 傳統的 財務會計理論의 骨格을 이루고 있는 基本概念이 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왜 利益의 測定이 會計의 標的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첫째로 配當可能利益이나 課稅所得과 같은 處分可能利益을 算定하고, 둘째로는 이 같은 利益의 測定過程을 통해서 經營者の 受託責任(stewardship)을 免責할 수 있는 指標가 되는 두가지 점에 있다.

이와 같이 會計의 주된 機能을 處分可能利益의 測定에서 찾으려는 思考는 有限責任制度에 입각한 株式會社制度의 生成·發展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株式會社의 企業形態가 發展한 결과 어떤 分配案이 提示된 경우에 그것이 資本을 餉食할 것인가 아닌가를 決定할 필요성이 생겨나고, 이에 따라 配當可能利益(profits available for dividends)의 金額이 특히 重要性을 갖게 된 것이다. 配當問題와 稅金問題의 두가지가 종래 株式分散의 程度가 높은 會社의 財務諸表에 影響을 미쳤던 것이다.⁽²⁰⁾ 株式會社企業에서 그 企業에 投資한 株式들은 投資에 대한 報酬로서 企業으로부터의 利益分配에 최대의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도 明白한 事實이다. 또한 企業에 대하여 債權을 갖고 있는 利害關係者도 자기의 債權이 安全線을 유지하고 있고 또 元利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神經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國家는 企業活動을 保障함으로써 企業所得에 대하여 課稅하여 國家의 財政收入을 調達한다. 이와 같이 企業이 하나의 社會的 制度로서 出現되었을 경우 企業과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는 株主, 債權者, 政府 등은 다같이 企業의 營利活動과 관련하여 중요한 利害關係集團으로 등장하고 그들은 각각의 입장에서 企業의 利益報告制度에 공통의 관심을 갖게 된다. 물론 投資者와 같이 企業에 投資하여 配當金을 기대하고 있는 株主, 貸與者나 外上賣出債權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企業에 대하여 어떤 金錢的 權利를 갖고 있는 債權者 그리고 國家가 필요로 하는 경비를 調達하기 위하여 個別的 報償없이 일방적·강제적으로 징수하는 政府 등은 동일한 目的을 가지고 企業의 經營活動과 利益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19) A.C. Littleton, op. cit., p. 18.

(20) Robert T. Sprouse and M. Moonitz, *A Tentative Set of Broad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s*, AICPA, ARS No. 3, 1962, pp. 2-3.

즉, 株主의 경우는 配當金, 債權者の 경우는 元利金의 回收, 그리고 政府의 경우는 租稅徵收 등 相異한 目的에서 企業利益에 관심을 갖는다. 이와 같이 同一한 目的에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利益에 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自明한 事實이다. 이와 같이 利害關係者들로부터 會計責任(accountability)을 賦與(charge)받고 있는 經營者들은 企業에 投下된 資本의 増減에 관한 公正하고도 올바른 會計를 수행할 社會的 責任을 지고 있다. 이것이 다름아닌 經營者의 受託責任(stewardship)인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현행의 財務會計理論은 주로 投資家나 課稅當局 등을 위한 可處分利益을 算定한다는 機能과, 經營者에 대하여는 受託責任을 免責(discharge)하기 위한 指標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 두가지 主된 機能的 特徵을 가지고 있다는前提下에서 展開된 理論이다. 그러면 이 機能的 特徵을前述한 構造的 特徵과 어떻게 關聯을 맺고 있는가?

우선 可處分利益의 算定方法에 관해서 볼 때 概念上으로는 經濟活動에 動員된 經濟的 資源의 一定期間의 純增加分, 換言하면 純資產의 增加分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方法을 採擇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問題點은 會計期末마다 經濟的 資源을 評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評價가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可處分利益과는 거리가 먼 利益이 된다는 것이다. 利益이 處分可能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資產 그중에서도 現金의 뒷받침이 없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傳統的 會計에서는 經濟活動에 動員된 資源(stock)과 이로부터 나타나는 增加를 「스톡크」(stock) 그 自體에서가 아니라 「흐름」(flow)의 過程에서 收益・費用으로 포착하여 利益을 算定한다. 이때 處分可能한 確實한 利益을 計算하기 위하여 마련한 基準이 實現主義(realization basis)이다.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資產을 歷史的 原價主義에 따라 記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다음으로 傳統的 會計機能의 두번째 特徵인 經營者에게 受託責任을 賦與하고 解消(charge and discharge)시키기 위해서는 利益計算을 할 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客觀的 證據, 특히 檢證可能한 客觀的 證據(verifiable, objective evidence)⁽²¹⁾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현행의 財務會計理論에서는 歷史的 原價主義(historical cost basis)와 實現主義(realization basis)을 採擇함으로써 그의 會計의 證據를 確保하고, 이의 方法論의 前提인 記錄對象相互間의 關聯性을 觀念的, 名目的으로 維持시키고 있는 것이다.

以上에서 考察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傳統的 會計理論의 基礎는 可處分利益과 受託責任의 免責賦與라는 會計의 特徵的 機能을 達成하기 위해서 歷史的 原價配分모델이란 特徵的 構造를 構築한 것이다. 이것은 會計論理를 方法論의 으로 볼 때 演繹的・規範的으로

(21) W.A. Paton and A.C. Littleton; op. cit., p.19.

展開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 會計實務로부터 發達하여一般的으로公正妥當하다고 믿는 것을 歸納的으로 要約하여 형성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方法으로 형성된 會計理論은 既存의 法律規定이나 一般慣行에 그의 論據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이 형성된 會計理論은 時代와 環境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될 性格을 갖고 있다.

三. 傳統的 會計理論의 問題點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훤행의 會計理論은 會計가 可處分利益의 算定과 經營者가 委任받은 他人의 財產을 管理한다고 하는 受託責任의 機能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歷史的 原價配分모델로서 特徵지위자는 構造論의 性格을 가지고 있다. 물론 오늘날에 와서도 會計가 갖는 이들 機能이 결코 무시되는 것은 아니나 企業의 經濟活動이 보다 複雜하고 多樣하게 됨에 따라서 企業內部 또는 外部에 있는 財務的情報의 利用者들은 傳統的 財務會計理論의 바탕에서 마련되는 財務的情報보다 훨씬 많은 情報를 요구하게 되었다. 外部의 投資者, 債權者, 政府, 從業員의 團體 및 消費者團體 등은 각각의 需要에 따라 多樣한 情報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傳統的 會計에 관한 많은 批判이 나타나게 되었다.

첫째는 會計機能 및 構造面에서 나타난 批判을 들 수 있다.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傳統的 會計는 會計機能을 极히 限定된 範圍 안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經濟社會의 变遷에 따른 經濟問題의 複雜化, 企業規模의 大型化, 그리고 企業을 둘러싸고 있는 利害關係者와의 關聯性 增大 등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要請하는 情報는 多樣하여 企業은 多元的情報을 測定하여 提供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例로서 美國會計學會의 『基礎的 會計理論에 관한 報告書』(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ASOBAT)에서 提示하고 있는 會計가 마련하여야 할 會計情報內容을 보더라도 ① 意思決定 ② 指揮·管理 ③ 資源의 保全과 管理 ④ 社會的 職能과 統制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情報를 제시하고 있다.⁽²²⁾ 이와 같이 多樣한 情報는 傳統的 會計機構에서는 마련할 수가 없다. 왜나하면 傳統的 會計理論은 經營者의 受託責任에 力點을 두어 會計의 檢證可能性을 중시하고 이에 따라 取得原價를 기초로 하여 會計理論을 展開하였기 때문에 會計情報의 有用性(usefulness)을 별로 重要視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트렐(G.R. Cattell)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會計理論이나 會計原則의 改善을 試圖하고 있는 사람이 當面한 텔레마는 會計情報의 有用性과 檢

(22) AAA,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Evanston, Ill., 1966, pp. 4-5.

證可能性의 對立의 問題라고 할 수 있다.⁽²³⁾ 즉 종래의 會計理論이나 實務에서는 檢證可能性이 有用性에 優先하는 傾向이 強하여 取得原價主義을 고수하고 實現主義을 존중하였으나, 近年에 와서는 이와는 反對로 有用性이 檢證可能性에 優先하게 된에 따라 資產의 評價基準으로서 時價主義가 主張되고 發生主義를 強調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같은 傾向이 나타나게 된 데는 여러가지 理由가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貨幣價值의 非回歸的이고 漫性的 下落傾向에서 찾을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構造論의 現행의 財務會計理論은 貨幣價值가 安定되어 있다는前提下에서 형성된 理論이다.⁽²⁴⁾ 歷史的 原價配分모델이 實踐的 受容可能性이 있다고 하는 것도 실은 貨幣單位安定을 前提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貨幣價值가 安定되어 있다는前提下에서 收益에 對應되는 費用을 이미 발생한 歷史的 原價로 配分하여 測定한다 하더라도 本來의 利益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는 利益을 測定할 수 있다는 論理가 成立한다. 그러나 대체로 今世紀에 들어와서 우리는 漫性的 인프레에 의한 각종의 시련을 받고 있다. 현실적으로 貨幣價值의 지속적인 下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긍한다면 貨幣價值安定의前提下에서 수립된 現행의 財務會計理論은 再檢討되어야 한다는 批判이 나오는 것은 當然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構造論의 會計理論이 現實社會의 實狀을 反映하지 못하고 있다는 意味論上의 批判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傳統的 會計理論構造는 形式的이고 觀念的이며 名目的으로 體系化된 構造的 特徵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歷史的 原價配分모델에 의한 會計理論構造가 아무리 論理的이고 整然하게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使用되는 記號(symbol)나 概念(concepts)이 實社會의 現象을 설명하지 못하고 또 測定할 수 없다고 하면 無意味한 것이 되고 만다. 換言하면 現實世界를 그대로 反映하지 못하는 狀況下에서 會計機構의 反復的 運營은 無意味한 計算作業으로 끝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 경우에 있어서도 會計가 갖는 受託責任의 機能은 어느 정도 수행하여 管理者에게 賦與(charge)된 責任을 解消(discharge)하는 役割을 不認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만으로는 現代社會가 會計에 期待하고 있는 任務를 모두 수행할 수는 없다.

그동안 많은 會計學者들은 이 같은 問題點을 經濟學에서 그 解決點을 찾으려고 努力하고

(23) G.R. Cattlet, op. cit., p. 64.

(24) George O. May, op. cit., pp. 46-50.

H.A. Finney and H.E. Miller, *Principles of Accounting, Intermediate*, 6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5), pp. 140-141.

있다. 换言하면 會計上의 測定과 經濟學의 實社會의 現象과의 相互關聯性을 經濟理論을 借用하여 解決하려고 努力하고 있는 것이다. 會計理論과 會計實務에 어떤 意味를 賦與하기 위하여 이 같은 問題意識을 갖고 研究한다는 것은 意義있는 일이다. 이와 같은 것이 可能하게 되기 위해서는 會計擔當者들이 使用하는 概念과 會計報告書의 利用者가 사용하는 概念은 相互一致되어야 하며 서로 差異가 있어서는 안된다.⁽²⁵⁾

經濟學的 概念으로서 會計概念을 설명하려고 試圖한 代表的 學者로서 캐닝(J.B. Canning), 스프라우스(R.T. Sprouse), 무닛즈(M. Moonitz) 및 에드워즈(E.O. Edwards)와 벨(P.W. Bell) 등을 들 수 있다. 캐닝은 그의 著書『會計의 經濟學』(*The Economics of Accountancy*)⁽²⁶⁾에서 會計學上의 諸概念을 定義하는데 經濟學上의 概念을 導入하여 精緻化하는데 貢獻하였으며, 스프라우스와 무닛즈는 그들의 共同研究報告書인『企業會計原則試案』(*A Tentative Set of Broad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²⁷⁾에서 資產의 가장 적절한 評價方法은 將來用役의 價值을 反映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따라서 會計節次의 判斷은 選定된 會計節次가 얼마나 잘 이 概念에 적합하도록 忠實하게 測定할 수 있느냐에 따라 判斷될 性質의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에드워즈와 벨은 그들의 共同著書인『企業利益의 理論과 測定』(*The Measurement of Business Income*)⁽²⁸⁾에서 價值와 利益에 관한 經濟學的 설명을 한 뒤 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測定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一連의 研究結果에 따라 實際 データ에서 얻은 測定側와 經濟學的 意味와의 사이에 어떤 乖離가 있는가에 관한 경験적 연구가 나온 바도 있다.⁽²⁹⁾

셋째로 현행의 財務會計理論이 批判받고 있는 점은 會計學上의 諸概念이 人間이 만들어 낸 特定의 會計節次에 따라 나타난 것이라 以外에 별다른 意味를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定義되어 있지 않은 것이 그 大部分이라는 점이다. 例를 들면 資產評價라고 할 때 이것은一般的으로는 Fifo 또는 Lifo라는 特定의 會計節次를 적용한 후에 나타나는 數值을 意味한다든가, 또는 歷史的 原價에 定額法의 會計節次에 따라 나타난 會計數值을 뜻하는 것 등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그러므로 會計上의 利益이라고 하면 特定의 規則(rules)을 적용하여 測定한 收益이 特定의 規則을 적용하여 測定한 費用을 超過한 부분을 뜻하는, 이른바 人爲的

(25) Eldon S. Hendriksen, *Accounting Theory*, 3rd edition, 1977, p. 4.

(26) J.B. Canning, *The Economics of Accountancy*, New York: The Ronald Press Co., 1929).

(27) R.T. Sprouse and M. Moonitz, *A Tentative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 ARS, No. 3, New York: AICPA, 1962.

(28) E.O. Edwards and P.W. Bell,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Business Income*,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1.

(29) 例로써, Carl R. Beidleman, "Valuation of Used Capital Assets" Studies in Accounting Research No. 7, Sarasota, Fla.; AAA 1973.

概念(*artificial concept*) 불과하다는 것이다. 會計理論의 領域에서 취급해야만 할 문제는 基礎的 諸概念에 대한 意味있는 解釋(*interpretation*)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解說을 기초로 하여 諸會計節次에 관한 評價를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로 傳統的 會計가 批判받고 있는 다른 또하나의 이유는 企業利益의 測定方法과 관련된 문제로 集約해 볼 수 있다. 우선 利益의 測定方法에 관하여 보면 傳統的 財務會計에서는 當期에 實現한 收益에서 당기에 發生한 費用을 差減하는 形式(損益法)으로 算出하였다. 그러나 利益은 未來純資產의 增加를 뜻하는 것으로서 利益의 变動은 資產 및 負債의 变動 결과로써 測定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財產法)으로 보는 見解가 支配的이다.⁽³⁰⁾ 이 입장을 따르면 資產原價중 費用에 配分하고 남는 部分을 資產價額으로 하는 現행의 損益計算優先의 思考는 「마차 앞에 말을 세우는」 誤謬를 범하고 있다는 批判을 면할 수가 없다.

다음으로 資產의 評價方法과 收益·費用의 測定方法과 관련하여 나타난 批判을 보면, 現행의 財務會計에서는 資產을 評價할 때 어느 資產項目은 取得原價主義을 따르고 어느 것은 低價主義를 採擇하는 등 評價에 있어서의 統一的 基準을 결여하고 있으며, 또한 收益을 認識하는데는 實現主義를, 그리고 費用을 認識하는데 있어서는 發生主義를 採擇하는 등 論理의 一貫性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會計慣行이 오랫동안 신봉되어 왔던 理由는 債權者 優先의 會計思考에 연유된 것으로 保守主義的 會計處理가 美德으로 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保守主義는 무닛즈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經驗 속에 存在하는 것 이지…論理에 存在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³¹⁾

이밖에도 傳統的 會計가 갖는 回顧的性格(*retrospective accounting*)에 대한 批判,⁽³²⁾ 傳統會計에서 信奉되고 있는 客觀性(*objectivity*), 重要性(*materiality*), 保守主義(*conservatism*), 繼續企業(*going concern*), 繼續性(*consistency*) 등 基礎概念에 대한 批判⁽³³⁾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은 모두 앞에서 설명한 법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省略하기로 한다.

四. 財務諸表中心의 會計理論의 展開

1. 歷史的 背景

傳統的 會計理論에 관한 以上과 같은 批判은 1960年代에 들어오면서 活潑하게 進行되었

(30) R.T. Sprouse and M. Moonitz, op. cit., pp.11-12.

(31) M. Moonitz, *The Basic Postulate of Accounting* ARS, No. 1 New York: AICPA 1961, p. 48.

(32) AICPA, *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 1973, p.15.

(33) Arthur Andersen & Co., *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 for Business Enterprises*, 1972, pp. 33-42.

다. 그것은 傳統的 會計가 社會各層에서 必要로 하는 問題解決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나타난 새로운 傾向은 會計學의 方法論에 대한 再吟味, 會計公準 및 會計原則을 둘러싼 會計理論構造의 再檢討, 會計目的에 관한 再整備 등의 問題로 集約해 볼 수 있다.

물론 會計目的에 관한 연구가 1960年代 以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例로서 美國會計學會의 1936年 報告書『試案』에서는 주로 債權者와 投資家를 위한 財務諸表의 作成에 重點을 두었던 것이 그의 第3次 改正인 1957年 報告書에서는 財務諸表의 基本目的을 株主와 기타 利益關係集團을 위하여 作成되는 一般目的 財務諸表(general-purpose financial statement)를 마련하는데 까지 發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努力에도 불구하고 目的과 手段간의 矛盾한 관係성을 맷지 못한 관계로 組織的이고 體系的 理論을 構成하지는 못하였다.

1960年代에 들어와서 美國公認會計士會(AICPA)는 會計調查研究(Accountancy Research Study) 第1號로서 『會計의 基本的 公準』(*The Basic Postulates of Accounting*)을 1961年에 무닛즈(M. Moonitz) 이름으로 發表한 바 있으며, 1962年에는 會計調查研究 第3號로서 『廣範한 企業會計原則試案』(*A Tentative Set of Broad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s*)를 스프라우스(R.T. Sprouse)와 무닛즈(M. Moontiz)의 共同名義로 研究·發表하면서 財務諸表의 目的設定의 重要性을 強調한 바 있다. 이들 會計調查研究書는 다같이 演繹的으로 公準接近方法(postulate approach)에 의한 會計理論을 構成하고 있으며 여기서 提示되고 있는 會計公準은 바로 會計目的 내지 基本的 前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美國會計學會는 1966年에 『基礎的 會計理論에 관한 報告書』(*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ASOBAT*)에서는 4가지의 財務諸表의 目的과 4가지의 會計情報基準을 發表한 바 있으며, 그후 美國公認會計士會의 會計原則審議會(Accounting Principles Board, APB)는 1970年에 APB 第4報告書로서 『企業財務諸表의 基礎가 되는 基本概念과 會計原則』(*Basic Concepts and Accounting Principles Underlying Financial Statements of Business Enterprises*)를 發表하여 그 안에 7가지의 質的目的(qualitative objectives)를 提示한 바도 있다.

이같은 會計의 基本問題에 관한 연구는 비단 美國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1972年에 오스트리아 會計調查研究財團(The Australian Accounting Research Foundation)에서는 그의 會計研究報告書第3號(*Accounting Research Study No. 3*) 『財務諸表의 目的과 概念』(*Objectives and Concepts of Financial Statements*)을 公表하고 그안에서 財務諸表의 目的에 대하여 광범하게 취급하고 있다.⁽³⁴⁾

(34) W.J. Kenley and G.J. Staubus, *Objective and Concepts of Financial Statements*, Accounting Research Study No. 3, pp. 13-20.

以上과 같은 研究努力外에 現在까지 가장 권위 있는 財務諸表의 目的에 관한 研究報告書로서 美國公認會計社會의 財務財表目的研究團에서 1973年 10月에 發表한 『財務諸表의 目的』(*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을 들 수 있다. 이것은 1971年에 當時 美公認會計士會長인 암스트롱(M.S. Armstrong)이 트루블러드(Robert M. Trueblood)를 위원장으로 하는 財務諸表의 目的에 관한 研究團을 任命한 후 2年의 研究結果로 나타난 것이다. 本 研究結果가 갖는 特징은 研究方法에 있어서 나타난 점이다. 즉, 本 研究團은 手段을 追求하지 않고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적용가능한 財務諸表의 目的을 찾으려고 하였다. 그리고 財務諸表의 目的是 企業經營者의 要求에 두고 設定된 것이 아니고 企業과 企業外部에 存在하는 財務情報利用者의 要望을 標的으로 하여 解明하고 있다. 또한 本 報告書에서는 監查機能의 重要性을 輕視하지는 않았지만 本 研究團은 會計情報의 性格을 밝히는데 第一次의 관심을 두었고 情報의 檢證可能性에 관해서는 二次的인 것으로 나루 있다. 財務諸表의 目的에 관한 이 報告書는 會計가 發展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基盤을 提供하고 있는 것으로서 앞으로 財務會計基準審議會(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FASB)가 會計基準을 마련하는데 基礎를 이루는 것이 될 것이다.

2. 會計理論構造의 定立法

會計의 理論構造(conceptual framework)란 會計目的과 基礎概念간에 首尾一貫된 體系를 갖는 하나의 체계로서 이는 一貫된 會計基準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財務會計 및 財務諸表의 本質·機能·限界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여기에서 會計 및 財務諸表의 目的是 會計가 指向하는 目標를 明白히 한 것이다. 그리고 會計의 基礎concept은 會計에서 取扱해야 할 對象을 選定하고 測定하여 利益關係者에게 要約·傳達하는手段이 된다. 이같은 類型의 諸概念은 이로부터 다른 概念을 誘導할 수 있도록 하고 會計 및 報告基準을 設定하고 解釋하는데 적용된다는 意味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基礎concept이라 할 수 있다.⁽³⁵⁾

會計의 理論構造를 樹立하려는 여러 研究機關, 委員會 그리고 學者들의 努力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全般的으로 수용되는(universally accepted) 構造(conceptual framework)로서 實務에 적용할 수 있는 理論體系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會計原則審議會(APB)에서 1970年에 發表한 報告書는 그 많은 研究努力 중에서도 注目할만한 價值가 있는 것인가 하나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實務를 記述한 것(describe)에 불과하며 會計가

(35)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Accounting Reporting: Elements of Financial Statements and Their Measurement" FASB Discussion Memorandum, 1976, p. 2.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方向을 규정(prescribe)하지는 못하였다.

랑겐더퍼(Harold Q. Langenderfer)는 이와 같은 體系的인 概念構造를 啓發하지 못하고 있는 理由를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要約하여 들고 있다.⁽³⁶⁾

첫째는, 判斷水準(level of judgement)이 明確하게 區別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判斷水準을 ① 會計集團(financial community), ② 會計專門機關(accounting profession), ③ 個別의 會計擔當者(individual accountant) 등 3區分하고 각각의 水準에서 이루어져야 할 判斷의 範圍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第 1 判斷水準에서는 例로서 會計目的的研究團을 두어 財務諸表의 目的을 設定하는 作業이 이루어져야 하며, 第 2 判斷水準에서는 例로서 財務會計基準審議會와 같은 機關을 通해서 第 1 判斷水準에서 設定한 財務諸表目的에 일치하는 會計基準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第 3 判斷水準에서는 企業內의 會計擔當者の 경우는 財務諸表의 目的과 會計基準에 따라 財務諸表를 작성하고, 公認會計士의 경우는 第 2 判斷水準에서 設定한 會計基準이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判斷하여야 한다고 한다.

둘째는, 종래의 會計學에 관한 研究는 새로운 理論體系를 構築하려고 努力했다고 하기보다는 自然法則을 確認하고 發見하듯이 會計에도 理想的인 理論體系가 存在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기나려 왔다는 受動的 研究態度에 있다.

셋째는, 會計理論을 定立시키는 方法論에 관한 문제로서 종래에는 어느 程度 獨單性을 갖는 論理的 方法보다는 民主的 方法이라 할 수 있는 歸納的 方法에 주로 의존해 왔다는 점이다.

종래의 會計理論構造의 定立努力이 랑겐더퍼가 설명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상과 같은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體系的인 會計理論構造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判斷水準을 明白히 규정하고 그 水準에 따라 全般的 理論體系를 演繹的으로 展開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라 하더라도 會計理論을 展開시킬 경우에는 모리스(Charles W. Morris)에 의하여 創案된 記號論(semiotics)의 3分野,⁽³⁷⁾ 즉 構造論(syntactics), 意味論(semantics), 語用論(pragmatics)의 어느 하나에 集中하지 않으면 안된다.⁽³⁸⁾

(1) 構造的 理論(syntactical theories): 構造論에서는 記號와 記號와의 關係를 研究한다. 따라서 記號가 提示하는 對象이나 記號를 利用하고 解釋하는 人과의 關係를 떠나서 오로지 記號와 記號가 結合하는 關係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 理論을 會計에 적용시킬 경우 構造的 理論이 뜻하는 바는 現行의 會計實務를 설명할 수 있는 會計過程의 公式構造 그 自

(36) Harold Q. Langenderfer, "A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Journal of Accountancy*, July, 1973, pp. 47-50.

(37) Charles W. Morris, *Foundation of the Theory of Signs*, 1938, pp. 13ff.

體에 관한 理論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理論에서는 資料의 集集過程과 公式的인 財務諸表의 作成, 그리고 이들 活動을 수행하는 過程에서 준수해야 할 規則 및 節次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2) 意味論的 理論(semantic theories): 이것은 記號와 記號의 指示對象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意味論을 중시하는 會計理論에서는 構造論과는 달리 어느 하나의 現象(對象 또는 事象)과 이를 표현하는 用語 또는 記號와의 相互關聯性에 주의를集中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解釋的 理論(interpretational theories)이라고도 한다.

(3) 語用論的 理論(pragmatic theories): 본래 語用論은 記號(sign)와 그의 利用者(user) 간의 관계를 연구한다. 語用論을 중시하는 會計理論에서는 會計情報의 利用者가 무엇을 要求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財務報告가 그들의 行動 또는 意思決定에 어떤 影響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 理論은 行動理論(behavioral theories)이라 할 수 있다. 流動資產 ₩1,000,000 + 固定資產 ₩3,000,000 = 總資產 ₩4,000,000라는 表現式을例로 들면, 이것을 利用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것이 뜻하는 바를 解釋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이 公式은 비로서 意味를 갖는다. 그러므로 記號는 사람을 떠나서는 存在하지 않기 때문에 語用論에서는 兩者的 關係를 연구하는데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

會計理論이 하나의 완전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위의 여러가지 관계를 다같이 包括하여 證明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로서 이를 期待할 수는 없다.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위의 어떤 것을 研究對象으로 하든 健全한 會計實務를 發展시키는 하나의 論理的 理論構造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事項을 明白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³⁹⁾

1. 會計實體 및 會計環境의 性格을 규정하는 公準의 設定
2. 財務會計의 基本目的의 設定
3. 財務諸表 利用者의 요구와 그에게 提出된 情報를 理解하고 解釋하고 分析할 수 있는 能力의 限界에 관한 評價
4. 報告內容의 選擇
5. 企業과 企業環境에 관한 情報을 傳達하기 위한 가능한 測定方法과 記述的 過程에 관한 評價
6. 實體와 그의 環境을 測定하고 記述하는 문제와 관련된 制約條件의 評價
7. 會計節次와 規則을 마련하는데 指針이 될 수 있는 諸原則 또는 一般前提의 開發

(38) Eldon S. Hendriksen, op. cit., p. 2 and p. 106.

(39) Ibid., p. 106.

8. 資料를 獲集・處理하여 目的適合한 情報를 要約・報告하는데 필요한 機構(structure)와 樣式(format)의 樹立

위의 諸事項은 會計理論에의 어떤 接近方法이든 다같이 共通的으로 考慮되어야 할 問題 들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 實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會計가 健全한가 또는 그렇지 못한 가를 判斷하기 위해서는 財務諸表의 樣式作成節次 및 이에 適用되는 規則 등을 評價하고 이들 樣式・節次・規則 등이 어떤 目的과前提에서 나타났는가를 밝혀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밝혀진 會計目的과 公準이 수긍될 수 없고 또 測定節次가 論理적으로 正當化될 수 없다고 하면 현행의 會計實務는 不適合하고 誤導될 수 있는 것으로 判斷하여 새로운 理論體系를 樹立하는데 努力하지 않으면 안된다.

3. 財務諸表目的 設定의 接近方法

會計理論構造를 體系的으로 確立하기 위해서는 會計分野에서 具體적으로 추구하는 目的과 範圍를 確定하는 段階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비단 會計分野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研究分野에서 理論을 展開하는 첫 段階가 된다.

그러면 會計 또는 財務諸表의 目的是 어떤 方法으로 設定하여야 할 것인가? 현재까지의 研究에서 보여주고 있는 財務諸表의 目的設定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接近方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⁴⁰⁾

第1接近方法은 우선 財務諸表는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는 未知의 여러 財務諸表의 利用者(a set of unknown users with multiples objectives)를 위하여 作成한다고 假定한다(즉, 一般目的 財務諸表).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企業外部의 여러사람, 組織 또는 機關이 經濟的 意思決定을 하는데 필요한 一般的의 情報를 提供하는데 財務諸表目的의 焦點을 마주게 된다. 여기서 企業外部의 利害關係集團은 주로 株主와 기타의 投資家, 債權者를 뜻하며 이밖에도 從業員 및 顧客과 一般大衆을 뜻한다. 政府도 利害關係者中의 하나이나 일반적으로 政府는 經濟的 意思決定을 하는데 公表된 財務諸表에만 의존하지 않고 特定目的을 위해서 特定의 報告를 要求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第2接近方法은 財務諸表의 目的을 特殊한 個別의 利用者の 意思決定에 적합한 情報提供에 두는 方法이다. 이 方法은 財務諸表의 利用者와 그들의 情報必要性에 관하여 規範的 모델(normative model)을 利用함으로서 그들이 意思決定을 위한豫測過程에서 필요로하는 情報가 무엇인가를 밝히게 된다. 그러므로 이 방법을 따를 경우에는 相異한 利用者集團에 따라 相異한 財務諸表의 作成이 要求될 수도 있고, 또 어떤 利用者에게는 필요하고 適合하

(40) Eldon S. Hendriksen, op. cit., 2nd ed., pp.102-105.

나 다른 利用者에게는 적합하지 못한 包括的 情報를 포함하는 財務諸表의 作成이 요구되기 도 한다.

위에서 설명한 財務諸表의 目的設定의 接近方法中 第1接近方法은 한편으로는 企業外部에 존재하는 財務諸表 利用者들이 單一財務諸表를 필요로하고 있다는 理由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財務諸表의 利用者들이 필요로 하는 情報에 대한 知識의 不足으로 인하여 現在까지 廣範圍하게 적용되고 있는 方法이다. 그러나 모든 財務諸表 利用者들이 필요로 하는 情報를 찾아 내어 이를 중심으로 한 財務諸表의 一般目的을 찾아 낸다고 하는 것은 심히 어려운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理由에서 아직 財務諸表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과 測定方法을 選擇할 수 있을 정도로 明確한 財務諸表의 目的이 設定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理由에서 美國會計學會의 1957年 報告書에서는 一般目的을 다음과 같이 包括的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會計의 基本的 機能은 企業의 活動을 理解하는데 必要한 情報을 蒐集하고 傳達하는데 있다.”⁽⁴¹⁾

다음으로 財務諸表의 目的設定方法中 第2接近方法은 財務諸表의 個別의 利用者の 정보 필요성에 기초하여 目的을 設定하는 方法이다. 이 方法을 택할 경우 우선 財務諸表를 利用하는 사람을 選定한 다음 그들의 意思決定過程을 分析한 후에 그들이 意思決定과 判斷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情報가 무엇인가를 明白히 함으로써 目的設定이 가능하게 된다.

이같은 점에서 볼 때 1966年 ASOBAT에서는 “會計는 情報의 利用者가 事情을 잘 알고서 判斷이나 意思決定을 할 수 있도록 經濟的情報를 識別하고 測定하여 커뮤니케이팅 하는 過程”⁽⁴²⁾이라고 定義한 것을 볼 때 第2의 接近方法을 指向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66~1968年 美國會計學會의 外部報告委員會에서는 이를 實際問題에 적용시키기 위한 하나의 試圖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⁴³⁾

또한 1973年 10月에 AICPA의 財務諸表目的研究團에서 發表한 『財務諸表의 目的』도 財務諸表 利用者の 情報에 대한 필요성과 意思決定過程에 관한 合理的 假定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意思決定 모델을 分析함으로써 財務諸表의 目的을 설정하고 있다. 즉, 本 報告書에서는 “財務諸表의 基本目的을 經濟的 意思決定에 기여할 수 있는 情報를 提供하는데 있다.”

⁽⁴⁴⁾고 扶植적으로 규정한 후에, 財務諸表 目的의 하나는 情報를 입수하는데 限定된 範圍內

(41) Committee on Accounting Concepts and Standards,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s for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1957 Revision*, p. 1.

(42) AAA,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Eranston, Ill., p. 1966, p. 1.

(43) Committee on External Reporting," An Evaluation of External Reporting Practices," *Accounting Review*, Supplement to Vol. XLIV (1969), pp. 79-122.

(44) Report of the Study Group on the 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 *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 New York: AICPA, 1973, p. 13.

에서의 權限·能力·資料源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企業의 經濟活動에 관한 주된 情報源을 財務諸表에 의존하고 있는 利用者에게 기여하기 위한 것”⁽⁴⁵⁾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研究團에서는 財務諸表 利用者의 類型을 限定된 權限·能力·資料source 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者로 具體化시키고 있는 한편 情報의 類型도 利用者에게 有用한 것으로 限定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研究團에서 設定한 財務諸表의 目的은 財務諸表를 利用하는 投資家들이 企業의 內在價值(intrinsic value)에 입각한 技資理論을 따르고 있고, 또豫測指標가 유용할 것이라는 暗默的 假定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 效率的 市場이 存在한다고 하는 假定(efficient market hypothesis) 하에서의 株式價格은 약삭빠른 技資家들의 行動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으로 假定한다. 만일 이것이 事實이라고 하면 이 경우의 財務諸表目的은 限定된 權限·能力·資料source를 가지고 있는 投資家를 위하여 情報가 마련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되어 情報를 가지고 있는 投資家와 財務分析家들을 위하여 情報가 마련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以上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財務諸表目的 設定方法에 있어서 第2의 接近方法은 實用的인 면에서 有用하나 다음과 같은 두가지 면에 難點이 있다.⁽⁴⁶⁾

첫째는, 여러 財務諸表 利用者들이 각자 갖고 있는 各種의豫測 및 意思決定모델에 적합한 情報를 選擇해 내기가 어렵다고 하는 점이다.

둘째는, 相異한 財務諸表 利用者에 따라서 相異한 報告書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財務諸表 利用者에 따라 數많은 情報를 準備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데 이의 상당부분은 他人에게는 無用한 것이 된다.

五. 結　　言

以上에서는 현재 會計財務의 뒷바침이 되고 있는 傳統的 財務會計理論에 대한 機能的·構造的 特徵과 이것이 갖는 問題點을 提示하고 새로운 會計理論을 정립하기 위한 基本方向을 檢討하여 보았다.

앞에서 證明한 바와 같이 傳統的 會計理論은 본래 會計慣行과 會計實務를 要約하여 일반화한 歸納的 接近方法에 의하여 형성된 理論이다. 그리고 이 理論은 會計機能이 可處分利益의 算定과 經營者의 受託責任을 수행하는데 기여하는데 있는 것으로 하여 檢證可能한

(45) Ibid., p. 17.

(46) Eldon S. Hendriksen, op. cit., pp. 117-118.

歷史的 原價配分모델로서의 構造的 特徵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目的과 構造를 갖는 傳統的 會計理論은 1940年頃에 確立되어 오늘까지 이르기 까지 世界 大部分의 國家에서 하나의 社會制度로서 受容되어 오늘날 일반적으로 採擇되고 있는 會計實務의 理論的 支柱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理論도 1960年代에 들어오면서 挑戰을 받기 시작하여 經濟社會의 變천에 따른 새로운 理論體系를 수립하려는 각종의 努力이 學界와 여러 研究機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傳統會計理論에 대한 批判이 나타나게 된 것은 현행의 會計制度가 變천하는 經濟社會가 요구하는 諸般 필요한 情報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傳統的 會計理論이 構造的인 次元에서 아무리 論理的으로 整然하게 構成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使用하는 記號나 用語가 實社會의 現象을 記述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測定한 것이 어떤 의미있는 解說을 해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새로운 會計目的과 機能의 바탕 위에서 형성된 새로운 理論에로의 轉換을 불가피하게 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近年 美國會計學會에서의 研究動向, 스프라우스(Robert, T. Sprouse) 무닛즈(M. Moonitz), 마테시찌(Richard Mattessich), 챔버스(R.J. Chambers), 베드포드(N. M. Bedford) 등의 所論, 그리고 最近의 美國公認會計士會의 財務諸表의 目的研究團의 報告書 및 財務會計基準審議會(FASB)의 活動이 注目을 끌고 있다. 아직 完成된 새로운 理論體系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時間과 努力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같은 움직임은 會計學의 차원높은 科學化에로의 一步前進한 것으로 疑心치 않는다.